

별첨3 우대사항(가산점 부여 기준)

□ 우리원 인사규정 제6조의 2(채용 우대)

적용대상	자격기준	전형단계 적용 (만점의 %)			증빙서류
		서류	필기*	면접	
취업지원 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전형별 5%~10%		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	전형별 5%			장애인증명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확인서(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)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증명서 추가제출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	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로서 본인 또는 대상가수의 구성원	-	2%	-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
한부모가족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	-	2%	-	한부모가족 증명서
북한이탈주민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	-	2%	-	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
다문화가정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	-	2%	-	다문화가족 증명서류
경력단절여성	접수마감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,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[경력단절여성 의미] 혼인·임신·출산·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하였거나,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[경력단절여성 가점부여 기준] 1) 여성으로서 2)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, 3) 공고마감일 기준 건강보험 등 증명서상 직장이력이 6개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	-	2%	-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) 및 주민등록등본(상세) 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비수도권 지역인재	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	-	2%	-	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
이전지역 지역인재	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2에 따른 대전, 세종, 충남, 충북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자	2%	2%	-	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

* 필기전형 中 필기시험(NCS 기초능력검사) 종합점수에 한함

※ 채용우대 가점은 전형 단계별로 합산하며, 최대 10점을 넘지 못함